■ 주택법 시행규칙[별지 제1호서식] <개정 2017. 6. 2.>

[] 주택건설 사업 등록신청서 [] 대지조성

(앞쪽)
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기간 15일	
신청인	대표자	명 생년월일			
	상 호		법인등록번호		
	영업소 소재지		(전화번호:)
자 본 금					
	술 자 산투자회사인 경 소속 기술자)			(기술등급:)
사 - (위탁관리 부동 우 자산관리회사	구 실 산투자회사인 경 사의 사무실)	면적 m²([]자기소유 []전세	[]	임대 []그 밖의	형태)
「주택법」 제4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					
같이 ([] 주택건설, [] 대지조성)사업등록을 신청합니다.					
년 월 일					
					또는 인)
협회장 귀하					
첨부서류	가. 법인: 나. 개인: 2. 등록기준어 가. 「건설: 서 나. 고용계 3. 건물등기시 4. 향후 1년2 5. 신청인이 6. 신청인이 따른 외국인 서류 가. 「외국 가의 아 나. 「외국 가의 정	따른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급입자본금에 관한 증명서류 산편가서와 그 증명서류 따른 기술인력의 보유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[술진흥법 시행규칙] 제18조제6항에 따른 건설기술자 경력경 부서 사본 항증명서, 건물사용계약서 등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/ 의 주택건설사업계획서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서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: 「재외국민등록법」 제7조에 따른 재외국 기국민인 경우: 「재외국민등록법」 제7조에 따른 재외국 기국인이 거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법인의 경우등록 사실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당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」을 체결한 등 전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등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그 획용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」을 체결하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등 자기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	등명서 또 서류 국민등록투 출입국된 각 목의 국가의 결 당 외국인 당 외국인 당 이나한	는 건설기술자 보유증명 부 등본 관리법」 제88조제2항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: 해당 국가의 정부 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 발급한 서류 국가의 경우: 해당 국	수수료 없 음

협회 확인사항

「주택법 시행령」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「주택법」 제85조제1항에 따른 주택 사업자단체(이하 "협회"라 합니다)는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합니다.

- 1. 신청인이 법인(대표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법인은 제외한다)인 경우: 법인등기사항증명서
- 2.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: 주민등록표 초본. 다만, 신청인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의 제시로 갈음한다
- 3. 신청인이 외국인이거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법인인 경우: 「출입국관리법」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. 다만, 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하지 아니합니다.
 - 가. 「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」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: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(Apostille)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
 - 영헌 시규 모든 응용한 증용한 예상 최목한의 현실자보여 예상 목가의 이모드라 (Appendix) 기본 기본 인간 보다 있는 기관이 할 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. 「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」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가의 경우: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협회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협회 확인사항 중 주민등록표 초본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